

##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11년 01월 21일

제안자 : 하재성 의원 외

### 가. 수정이유

-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함.

### 나. 수정내용

- 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##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「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

“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

“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#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)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3:00까지로 한다. 다만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:00까지로 하며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</p> <p>② 삭제</p>	<p>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2:00까지로 한다. 다만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</p> 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